

의안번호	2210435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.
추 계 번호	25F28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
재산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시, 지방세는 2026년 5.1억원, 2030년 5.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5.3억원(연평균 5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개정안에 감면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감면실적을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(안 제13조 제2항 제4의2호)	-5.1	-5.1	-5.1	-5.1	-5.1	-25.3	-5.1
－ 취득세	0	0	0	0	0	0	0
－ 재산세	-5.1	-5.1	-5.1	-5.1	-5.1	-25.3	-5.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 제2항 제4호의2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신설 － 감면내용: (현행) 취득세 25% (개정안) 취득세 25%, 재산세 50%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 - 감면 적용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감면실적을 추계
-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향후 취득계획이 없으며, 최근 취득세 감면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 - (재산세) 최근 2년간 연평균 감면액인 5.1억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 개요) 한국농어촌공사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른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 - 취득세 감면율: 25% 감면
 - － 2022.12.31. 이전 50% 감면 (2023년 개정 시 감면율 축소)

- 재산세 감면 없음
 - 2022.12.31. 이전 50% 감면 (2023년 개정 시 감면 일몰)
- 감면내용: 농어촌 취락용지, 상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한계농지, 간척지, 임야 등 부동산 및 폐지된 농업기반시설
 - 해당 부동산: 농어촌연구원(경기 안산시 소재로 2000년대 초반 취득)
- 감면 적용기한: 2025.12.31.

[표 2]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

	감면율	
	취득세	재산세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	25% (~2022.12.31.) 50%	- (~2022.12.31.) 50%

주: ()는 감면율 변화

- (추계방법)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등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- (취득세)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향후 취득계획이 없으며, 최근 취득세 감면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 - (재산세) 최근 2년간(2021~2022년) 감면액의 연평균 감면액인 5.1억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2.12.31.까지 재산세 50% 감면 적용

[표 3]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1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
취득세	0	0	0	0
재산세	4.8	5.4	0	0

자료: 한국농어촌공사 제공자료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시, 지방세는 2026년 5.1억원, 2030년 5.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5.3억원(연평균 5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에 감면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감면실적을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(안 제13조 제2항 제4의2호)	-5.1	-5.1	-5.1	-5.1	-5.1	-25.3	-5.1
- 취득세	0	0	0	0	0	0	0
- 재산세	-5.1	-5.1	-5.1	-5.1	-5.1	-25.3	-5.1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